

# 韓日經濟關係의 未來像

## —懸案問題解決과 共同利益追求方向 및 制度的摸索을 中心으로—

< 1 >

沈 成 根

<特許廳 審査4局 雜貨課>

編輯者 註: 本稿는 1981年 1月 國際文化協會와 駐韓日本大使館 共同主管, 每日經濟新聞社와 韓國貿易協會의 後援으로 懸賞募集한 「韓日間의 貿易逆調 是正을 위한 兩國經濟의 未來像」이란 主題의 優秀入賞論文이다.

### 1. 序 論

未來像은 어디까지나 不確性的 概念이며 人間의 努力如何에 따라 實現되는 모습은 相反될 수 있다. 그러나 未來像의 豫測이 상당히 近接하게 中될 수 있으며 韓日 兩國도 未來像의 모델을 設定하고 接近해가는 努力에서 懸案問題 해결모색의 意義를 찾아야 할 것이다. 國際社會에서는 이미 永遠한 親善도 永遠한 敵도 存在하지 않는다. 그런데 韓日間의 距離는 地理적으로 近接해 있어 釜山 다대포에서 對馬島까지 49.9km, 趙五連선수가 水泳으로 건넌 懸案問題 사이에서 東海岸에서 日本九州까지도 120마일에 불과한 이웃이다.

세계적 眼目에서 봐도 韓半島는 山東半島에서 東쪽으로 약 120마일로 中共南端에서 北端까지 直線距離半徑으로 태안半島를 中心, 圓을 그리면 中共人口 密集地域과 日本列島는 地表의 1/4이 넘는 太平洋으로 進出한 防波堤를 聯想케 한다. 그런데 韓半島는 傳統的으로 中國人에게는 「大陸을 踰 수 있는 땅치」로, 日本人에게는 「日本列島의 가슴을 겨누는 七首」로 認識되어왔으나 이런 歷史적으로 無根한 發想은 侵略의 思考이며 經濟의 循環器같은 海上交通과 關聯해서 종래의 概念은 經濟의 意味로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1965年 12月 18日에 一連의 條約으로 歷史의 殘滓를 完全히 그리고 最終적으로 解決된 것으로 確認하고 國交를 正常화함으로써 經濟의 潛在力을 發揮하게 되었으나 國民間에 깊은 溪谷을 等閑視했고, 經濟協力의 增進이나 貿

易을 均衡된 基礎 위에서 가능한 限 最大限의 水準까지 增進시킨다는 目標實踐에도 無力하였다. 그리하여 兩國國民의 融和와 貿易不均衡의 是正, 새로운 經濟協力關係를 摸索한 必要가 있다. 摸索方向은 永遠히 이웃으로 繼續될 地理的 宿命을 考慮하여 現今의 最大利益에 만 執着할 것이 아니고 至今까지 過去의 關係를 들추는 것이 禁忌로 된 感이 있으나 充分히 認識되지 않은 事實은 內燃하면 理解와 融和를 害치므로 溫故知新의 姿勢로 1世紀를 돌아보며 未來에는 實質上 偏益, 偏務를 排除하고 共同利益이 追求되어야 할 것이다.

### 2. 貿易概況

兩國間의 貿易收支는 1965年以來 韓國側 對日赤字가 50% 以上씩 繼續되었고 76~78年사이에는 平均 168%로 餘他諸國에서 輸入規制를 招來하며 얻은 貿易黑字를 다해도 對日赤字 메꾸기에 不足하였고 79년에는 輸入先을 多角化했지만 對日赤字額을 前年度水準인 33億弗에서 줄이지 못하고 80년도 이런 趨勢는 繼續되어 累積赤字規模는 180億弗에 達했다.

赤字의 現實的이고 直接的인 理由는 日本 輸出産業의 勞動生産性의 優位와 政策的諸支援으로 因한 높은 競爭力의 纖維類, 水產品等 敏感品目(sensitive items)에 대한 實效保護率 18.4%의 높은 關稅와 輸入量割當自律規制 같은 非關稅障壁, 傳統的으로 排他的인 商慣習, 消費者들의 韓國商品에 대한 歪曲 등으로 日本側 對韓輸入이 不振한 反面, 韓國의 成長政策으로 鐵鋼, 電子, 機械等 原資財와 資本財의 需要擴大, 其他 地理的隣接, 歷史的關係로 言語, 慣習, 制度等に 익숙한데서 오는 便宜性, 韓國企業이 先進諸國技術을 比較할 情報能力 및 長期開拓精神의 缺如에서 오는 安易, 先發工業國으로서 韓國의 成長需要를 供給할 能力保有, 對日資本導入의 60% 内外를 占하는 商業借款, 直接投資技術供與의 契約上 購入先을 日本國內企業으로 制限하는 등 이 對日輸入을 誘發했기 때문이었다.

### 3. 日本貿易, 纖維工業發達

그러나 原因을 歷史的인 觀點에서 考察하면 韓日貿易은 世宗 25年 癸亥約條로 產物이 不足한 倭國에 善隣의 表示로 3浦를 열어 貿易을 願하는 倭商에게 倭國의 島主나 領主의 文牘을 받아오게 하여 圖書를 發給 許諾하니, 興利船이 너무 많이 渡來하였다 하여 日本貿易을 논조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1853년 美國의 Matthew Calbraith Perry號의 艦隊外交로 1854. 2. 江戶灣을 開港했던 前例를 模倣, 韓國과 1876년 丙子修好條規로 近代貿易을 始作한 以後, 同年 10월 同條規附錄으로 日貨의 韓國內 通用權을 確保하고 議定書 교환으로 關稅自主權을 否認하면서 1883년까지 韓國貿易을 獨占했고, 1882년부터 美·英·獨·佛等 列強에게도 門戶開放後 餘他國의 關稅權認定의 例에 따라 1883년 韓日通商章程과 海關規則으로 低廉한 關稅權을 어쩔수 없이 認定했으나, 同年 10月 8日 日本 第一銀行釜山支店主任 大橋半七郎에게 Möllendorff의 名義로 委託契約形式으로 稅關事務를 넘겨받아 1889年 10月까지 自主關稅權의 實效性을 排除시킨 후 韓國의 값싼 米穀, 豆類로 幼稚段階의 日本工業에 低賃金을 維持하였고, 日本纖維類가 韓國總收入의 81.2%까지 占하여 韓國은 日本纖維工業發達에 決定的役割을 하였고, 日本米穀은 高價로 他國에 輸出했고, 韓國內貿易商權을 취고 輸出入價格을 日商이 定하여 1889년 凶年에 穀食이 飢饉으로 팔려 流出되자 韓日通商章程 第37款에 依據, 防穀令을 내려 大豆의 廉價輸出을 禁하자 11萬圓의 損害賠償을 시켰다. 또한 韓國의 金·銀·金鑛石을 1877~1882년에 韓國 總輸出의 20.7%, 1898년에 41.6%, 1905년에 70%를, 飢饉에 輸入해서 對外貿易決濟手段을 더욱 增加시켜 貿易을 育成한 反面 開港以後 韓國商權은 資本이 零細하고 對外貿易路(網)를 갖지 못했고, 1885年 日本郵船, 1890年 大阪商船이 韓國沿岸에 進出 韓國對外貿易輸送이 日船에 依存, 韓國貿易이 日人손에 이루어졌고, 對像國도 日本에 偏重되어 1890~1894년 간은 輸入이 61%, 輸出이 84.4%, 淸日戰爭에서 승리한 1895년엔 輸入이 72.2%, 輸出이 95%로 急上昇했다. 韓國政府는 財政窮乏과 日本의 內政干涉으로 韓國商人을 積極保護하지 못했으나 1905年 日商人의 國內市場進出로 市廳商人이 沒落하자 皇室에서 內帑金 30萬圓의 救濟金을 내놓았으나 財政顧問인 日人目賀田가 가로채었고, 오히려 統監府는 國內商人을 禁壓하였다. 國內産業의 落後와 國內 商人의 沒落은 1886년부터 貿易은 赤字를 繼續, 그 規模가 1895년에는 輸出의 222%, 1905년에는 317%까지 膨창했으며 1910년에는 1,991萬圓의 수출에 3,978萬圓을 수입하여 赤字規模가 輸出의 100%였다.

### 4. 日本의 世界의 水産國으로의 發達過程

또한 水産業에 있어서도 世宗때 開港을 許諾한 3浦에 日人移住漁村이 생겼으며 高麗, 朝鮮이 空島化政策을 쓰는동안 1618年 米子の 町人 大谷基吉과 村川市兵衛等 日本漁夫가 鬱陵島에 出漁한 事實이 있고 以後 約 80年間 日人의 韓國沿岸出漁가 잦아 肅宗때는 安龍福事件이 일어났으나 1876년 開港後 日漁船은 季節的으로 集團的으로 韓海通漁하는 不法漁撈가 恣行되다가 1883. 6월 韓日通商章程 第41款에 의해 韓國의 全羅, 慶尙, 江原, 咸鏡의 4個道沿岸에서 密獵이 合法化되었으며, 韓國漁船도 日本의 肥前, 筑前, 石見, 長門, 出雲, 對馬島海岸에 出漁를 할 수 있다고 規定했으나, 日漁船이 버리고 온 日本沿岸漁場은 韓國沿岸의 2분의 1의 漁獲高도 어렵게 荒廢하여 出漁할 必要도 없었고 資本, 技術面에서 能力도 없었다. 특히 韓海通漁의 合法化로 東海, 南海와 西海의 一部는 물론 淸國人에게 許容된 漁場인 西海 忠淸以北沿岸에서 漁撈를 했고, 濟州道沿岸에서 新式漁法으로 전복등을 濫獲, 濟州漁民의 反발을 샀으며 漁撈外에 犯法行爲도 莫甚하였다.

그리하여 1889. 11월 通漁手續, 漁業稅, 罰則등을 定하는 韓日通漁章程이 체결되었으나 1890년 手續을 밟은 通漁船은 718隻에 불과한 反面, 1890년말 日領事館命令으로 朝鮮漁業協會가 韓國通漁 日船數가 3415隻으로 調査했고, 1892년 韓國各地方을 踏査한 日本人 中川恒次郎의 陳述로는 慶尙, 全羅兩岸을 中心으로 日漁船이 2千以上이라고 함을 보면 不法密獵의 規模를 推定할 수 있고, 1891年 3月 濟州漁民이 日漁船出漁를 근본적으로 禁해줄것을 政府에 累次 要求하다가 民擾까지 일으킨 事實, 1900년 京畿沿岸, 1904년 8월 外部 告示로 漁採區域을 忠淸, 黃海, 平安沿岸까지 擴張한 事實 1908년 日人에게 沿岸漁業뿐 아니라 內水面까지 自由로운 漁獲을 許容했던 漁業協定書체결과 韓國漁業法이 試行되어, 韓國漁業發達の 潜在力인 原始資源을 枯竭시키며 發展한 日本漁業은 1910년 公式統計上으로 韓國에 進出한 漁船數가 3,960隻, 漁撈人員 16,500名이고, 韓國漁船은 12,149隻, 漁撈人員 76,900名이었으나 漁獲量은 日本이 앞질렀고, 下啓加·山協宗次の「韓國水産業調査報告」에 의하면 이때도 密漁船이 엄청난 것이 立證되는 點, 1,910년까지 日本內韓國通漁組合이 75個나 되는 점으로 日本 水産業 發達過程에 黃金漁場을 提供한 것을 알 수 있고, 1910년까지 韓國內 40個所에 1,146戶의 日人 漁村이 建設되어 日本水産業에 市場까지 提供했다. 그러나 韓國漁業은 專用漁業權, 定置漁業權, 區劃漁業權을 喪失하고 日本側이 全部活用하는 形式的平等規定에 의거 日本沿岸漁場에 그물한 번 못던진 채 不完全兼業形態로 分解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계속—